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0.12.20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11월 19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1월 22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0.12.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정희)

가. 제안이유

-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기관·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조례 제정목적(안 제1조)
- 지역치안협의회 설치, 기능, 구성(안 제2조 ~ 안 제4조)
-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의 임기(안 제5조)
-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장의 임무(안 제6조)
- 지역치안협의회 회의운영(안 제7조)
- 실무협의회의 및 간사 운영(안 제8조 ~ 안 제9조)

-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의 해촉(안 제10조)
- 치안협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 및 사업예산 지원 등
(안 제11조 ~ 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 현 영)

- 본 조례안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통해 법질서 확립과 범죄 예방을 위한 “지역치안협의회”를 구성·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
- 주요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경찰기관 등과 협의하기 위한 “지역치안협의회”를 운영하는 것이 국가사무 침해 여부와 「경찰법」 제16조의 “치안행정협의회”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였음
-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기관 등과 관할 구역 안의 치안업무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므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·운영하는 것은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제한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속한다고 해석되어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됨
- 지역치안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도 「지방자치법」 제141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32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하여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하며, 관련기관 간 업무분담 및 조정 등도 명확히 이루어져야 함
- 종합적으로 이 조례안은 주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생활환경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경찰, 소방서, 교육장, 기타 관련 기관 등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한 지역치안협의회 구성·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주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칫 국가사무인 경찰의 치안업무와 혼동되어 예산의 사용 등이 지방자치행정의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 시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1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11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

2. 제안이유

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기관·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
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근거 마련(안 제2조, 제3조)
- 나. 지역치안협의회 구성과 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'실무협의회'
구성 근거 마련(안 제4조,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2008. 3.27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발족
- 2) 2010. 3.31 제1차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시 토의 안건 상정
- 3) 2010.10. 6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시 조례안 제정 추진 요구
- 4) 2010.10.28 지역치안협의회 관련 조례 제정 공문 협조 요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필요없음

라. 입법예고 : 생략(긴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)

마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범질서 확립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영등포구 내 기관, 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,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의회 설치)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협의회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협의한다.

1. 범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
2.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·건의사항
3.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간 지원 협조에 관한 사항
4. 기타 지역 내 범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, 당연직 위원은 영등포구의회 의장, 영등포 경찰서장,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, 영등포 소방서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1. 아동, 청소년, 여성분야 등 전문가
2.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
3. 행정·교육·언론 및 유관기관 기관장
4.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.

제5조(위원의 임기)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, 각 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의 임무)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,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- 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-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8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에서 심의·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각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(이하 “실무협의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전에 대해 실무협의하며, 실무협의회에서 조정·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.
-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각 기관·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.

제9조(간사)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

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② 간사(간사를 맡은 기관)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, 주요 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
2. 참여기관,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
3.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
4.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

제10조(위원의 해촉)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,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본인이 원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지원 등) ① 구청장은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자치사무에 한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, 시행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